



제420회국회(임시회)
제 1 차 교 육 위 원 회

학교 이전 · 재배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학교 이전 · 재배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 박정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803호)

2024. 12.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4
1. 총괄적 검토	4
(1) 제정안의 내용 및 구성	4
(2) 학교 이전·재배치 현황 및 제도	5
가. 학교 이전·재배치 현황	5
나. 학교 이전·재배치 절차 등	6
다. 교육청별 학생배치계획 및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 수립현황 ·	8
(3)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의견	10
2. 주요 조문별 검토	12
(1) 총칙(안 제1조부터 제5조)	12
(2) 종합계획(안 제6조에서 제10조)	19
(3) 배치계획(안 제11조에서 제13조)	23
(4) 도시·군관리계획과의 관계(안 제14조 및 제15조)	25
(5) 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안 제16조)	29
(6) 특례(안 제17조)	30
(7) 지원기관 설치 등(안 제18조, 제19조)	36
(8) 부칙	3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정훈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4. 10. 21.
3. 회부연월일 : 2024. 10.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도시 확장과 구도심 재개발, 재건축이 늘어나면서 도시의 인구분포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고, 이에 따른 공교육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하지만 현행 법체계로는 한계가 있음. 즉 학령인구가 특정 지역에 밀집되고 있는데도, 수십년 전 인구분포 기준으로 초중고교 학생 배정을 하고 있어 교육현장에서의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임.

특히 학령인구가 밀집된 지역은 과밀학급 문제를 겪고 있고,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멀리 학교를 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는 학생들이 늘고 있지만, 학교 배정 조정과 신설학교 설립으로 이런 문제를 시정해야 하는데, 현 법령 체계로는 한계가 있음. 이는 ‘학교의 신설과 이전에 대한 권한’이 교육감에 있는데도, 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학교 위치를 결정하는 법체계가 결정적 장애 요인이 되고 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학교 위치를 결정하고 있어 의사결정 과정이 통일되지 않아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대처가 힘들기 때문임. 즉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원하는 위치

와 땅을 제공하는 사람이 원하는 위치가 달라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임.

예를 들어 대규모 재건축 단지가 들어선 이후 인근에 중학교를 만들려고 할 때 해당 교육청이 주도해 교육수요를 파악해 학교 입지를 결정해야 하지만 학교 입지 결정 권한이 교육청에 있지 않아 학생들이 불편을 겪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감이 학교의 위치에 대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행정기관에 학교 설치와 이전 권한을 적극적으로 부여하며, 학교 이전, 재배치의 경우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를 면제해 교육 현실에 맞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임.

주요내용

가. 학교 이전·재배치 촉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이전·재배치 수요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하며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학교 이전·재배치 촉진에 관해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5조).

다. 학교 이전·재배치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내용,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 라. 학교 이전·재배치에 관한 구체적인 배치계획의 수립, 내용, 절차에 관해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 마. 배치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도시·군관리계획 중 학교 설치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 바.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개발사업으로 인해 유발되는 교육수요를 예측하도록 하여 학교 설치에 관한 사항을 개발사업계획에 포함시키고,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16조).
- 사.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를 면제토록 함(안 제17조).
- 아.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학교 이전·재배치 지원기관을 지정토록 하여, 교육감의 종합계획 및 배치계획 수립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Ⅲ. 검토의견

1. 총괄적 검토

(1) 제정안의 내용 및 구성

제정안은 학교 이전·재배치에 관한 종합계획 및 배치계획, 도시·군관리계획과의 관계, 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 특례 등 학교 이전·재배치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임.

제정안은 본칙 1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

학교 이전·재배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 본칙(19개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종합계획, 배치계획의 관계)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종합계획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제7조(종합계획의 내용)
제8조(공청회의 개최)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제10조(종합계획의 승인)	
제3장 배치계획	
제11조(배치계획의 수립)	제12조(배치계획의 내용)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제4장 도시·군관리계획과의 관계	
제14조(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제안)	제15조(도시·군관리계획 입안·결정)
제5장 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	
제16조(학교용지의 조성·개발)	
제6장 특례	
제17조(학교 이전·재배치에 관한 특례)	
제7장 지원기관 설치	
제18조(학교 이전·재배치 지원기관)	제19조(「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 부칙(시행일)	

(2) 학교 이전·재배치 관련 현황 및 제도

가. 학교 이전·재배치 관련 현황

최근 3년(2022~24) 학교 이전·재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총 22건으로 학교 종류별로는 초등학교 10개, 중학교 8개, 고등학교 4개소가 이전·재배치 되었음.

이를 학교 이전 성격에 따라 구분하면¹⁾ 단순이전이 4건, 신설대체 이전이 14건, 통폐합 이전이 4건이었음.

<최근 3년(2022~24) 학교 이전·재배치 현황>

	단순이전	신설대체 이전	통폐합 이전	계
초등학교	1	7	2	10
중학교	-	6	2	8
고등학교	3	1	-	4
계	4	14	4	22

자료 : 교육부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면 5건²⁾, 17건이었고, 연도별로는 22년 8건, 23년 4건, 24년 10건이었음.

1) 신설대체 이전은 농어촌 및 도심 공동화로 학생수가 감소하는 지역학교에서 신설 수요 발생 지역으로의 이전 여건이 조성된 학교를 의미하고, 통폐합은 적정규모 학교 육성 기준등에 따라 학생수가 지역별로 일정규모 이하가 되는 등 통폐합 여건이 조성되어 통폐합하는 학교를 의미함.

2) 서울 1, 인천 0, 경기 4건

나. 학교 이전·재배치 절차 등

학교 신설·폐지 및 이전에 관한 사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의 관장 사무임³⁾.

학교 이전 절차를 개관하면 학교 이전 공모계획을 수립한 후, 희망학교 선정, 공론화·설문조사 등을 거쳐서 재배치 확정시 해당 학교에 대한 지원계획 등을 수립하며, 설치조례 개정 등을 통해 학교 이전·재배치를 완료함.

□ 학교 이전 절차(시·도교육감 관장사무)

- 학교 이전 공모계획 수립 및 안내(D-4년) : 이전 대상학교 공모, 이전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이전재배치 희망학교 선정(D-4년) :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희망학교 없을 경우 재공모 추진
- 최종 정책결정을 위한 공론화(D-3~2년) : (학교) 추진위원회 활동, 학부모, 동문회 등 간담회, (교육청) 지원단 구성·운영을 통한 업무지원
- 설문조사 실시(D-2년) : 공감대 형성 시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실시
- 재배치 확정교 지원계획 수립 및 행·재정 지원(D-1년) : 학생, 학부모, 교직원 행·재정 지원, 기존학교 활용계획 수립
- 재정투자심사 실시(D-1년) : 시·도교육감이 학교 이전 계획을 재정투자사업 심사에 심의 의뢰하고 승인된 경우 사업 추진 및 이전비 교부
※ 교육청 자체투자심사(40억원 이상) 및 교육부 중앙투자심사(300억원 이상) 실시
- 학교 이전 재배치 완료(D년) : 시립(도립)학교 설치조례 개정, 학교 개교

자료 : 교육부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한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학교의 결정기준으로 통학권의 범위, 지역 전체의 인구규모 및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배치간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

특히, 초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 중고등학교는 3개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하며,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통학거리를 1천5백미터 이내로 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⁴⁾. 다만, 이러한 학교배치 및 통학거리는 관할 교육장이 해당 지역의 인구밀도, 가구당 인구수, 학교규모, 통학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참고로, 경기도의 경우 초등학교 평균 통학거리가 1천 5백미터를 초과하는 비율이 17.8%라는 분석이 있음⁵⁾.

4)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동법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9조(학교의 결정기준) ①학교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학권의 범위, 주변환경의 정비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전한 교육목적 달성과 주민의 문화교육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심시설이 되도록 할 것
2. 지역 전체의 인구규모 및 취학률을 고려한 학생수를 추정하여 지역별 인구밀도에 따라 적절한 배치간격을 유지할 것

3~9. (생략)

10. 초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3개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할 것. 다만, 초등학교는 관할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설치할 수 있다.

11.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다른 공공시설의 이용관계를 고려하여야 하며, 통학거리는 1천5백미터 이내로 할 것. 다만,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초등학교중 학생수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학생수가 학년당 1개 학급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까지 통학거리를 확대할 수 있으나, 통학을 위한 교통수단의 이용가능성을 고려할 것

12. 제10호에 따른 학교배치 및 제11호에 따른 통학거리는 관할 교육장이 해당 지역의 인구밀도, 가구당 인구수, 진학률, 주거형태, 설치하려는 학교의 규모, 도로 및 통학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린주거구역의 범위는 이미 개발된 지역의 경우에는 개발현황에 따라 정하고, 새로이 개발되는 지역(재개발 또는 재건축되는 지역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2천세대 내지 3천세대를 1개 근린주거구역으로 한다. 다만, 인접한 지역의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천세대 미만인 지역을 근린주거구역으로 할 수 있다.

5) 경기연구원, “어린이 스쿨버스의 효율적인 운용방안”, 2023.

다. 교육청별 학생배치계획 및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 운영현황

현행 초중등교육법령⁶⁾에 따라 교육청은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학생배치계획에는 학교·학급·학생수 등 현황 및 향후 여건 분석,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현황 등을 토대로, 과대·과밀기준과 해소계획, 학교 통폐합 기준 등을 정하고, 학교종류별(공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로 학급편성기준, 학생배치계획, 학교 신·이설계획을 정하고 있음.

시도교육청별 학생배치계획 수립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교육청은 5년 단위의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대구교육청은 10년단위, 충북교육청은 6년단위로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경남교육청은 중기계획뿐 아니라 단년도 계획도 수립하고 있음⁷⁾.

< 시도교육청별 학생배치계획 수립 현황 >

교육청	학생배치계획(중기)	수립주기	단년도계획
서울, 경기 등 14개	○	5년	x
대구	○	10년	x
충북	○	6년	x
경남	○	5년	○

자료 : 교육부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통학거리(m)	300 이하		300~500		500~750		750~1,000		1,000~1,500		1,500 초과	
구분(개, %)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경기도	153	13.3	381	33.2	206	18.0	85	7.4	118	10.3	204	17.8

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학생배치계획) 교육감은 그가 관할하는 학교에 학생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학년도별로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7) 경북은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중기계획이 아닌 단년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또한, 시도교육청별로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는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학교가 증가함에 따라 소규모학교의 적정 규모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학교수 변동추이에 따라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중점/권고) 설정 및 추진,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 등을 정함.

시도교육청별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 수립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교육청이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교육청별로 수립주기가 5년단위, 필요시 수립, 3년단위로 상이함), 경기·강원·충남교육청은 단년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시도교육청별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 수립 현황>

교육청	중기	수립주기	단년도
서울, 대구, 대전, 세종, 충북, 경북, 제주	o	필요시	x
부산, 인천, 광주, 울산, 경남	o	5년	x
경기, 강원, 충남, 전남	x	-	o
전북	o	3년	x

자료 : 교육부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3)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의견

제정안은 학교 이전·재배치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종합계획, 배치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과의 관계,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이전·재배치 수요에 대응하고 이를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특히, 학령인구 변화등으로 지역별로 학생수와 학교가 불균형하게 배치되어 있는 교육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학교의 이전등에 대한 권한이 교육감의 관장사무임에도, 학교의 배치 기준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군관리계획 등을 통해 결정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이를 위한 절차적인 특례 등을 규정한다는 측면에서 제정실익을 인정할 수 있음.

다만, 기존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관계 부처 및 기관과의 의견조율이 필요하고, 지방교육자치의 원칙상 교육감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추진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교육부, 교육청 및 국토교통부는 동 제정안의 제정 필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관계기관 의견>

【교육부】 : 신중검토

- 교육감이 학교의 위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설치와 이전 권한을 적극적으로 부여하기 위한 제정안의 취지에 공감함.
- 다만, **교육자치**와의 관계에서 학교의 이전·재배치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으로, 교육부장관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일부 조항은 지방자치에 부합하지 않을 소지가 있고,
도시계획과의 관계에서 제정안은 도시계획의 일반법인 국토계획법에 따라 수립하는 도시·군계획과 중복 수립되어 교육청-지자체간 분쟁의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요청됨**.
- 또한, 시도교육청에서 지역의 여건에 따라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학교 통폐합·이전·재배치를 시행하고 있음.

【국토교통부】 : 신중검토

- 현행 학교용지법과 달리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학교용지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개발사업시행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신속한 주택공급 저해 등 국민 불편이 우려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요청됨.

【시도교육청】

- 서울교육청
 - 현행 제도에서 교육감의 권한으로 가능한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특별법 제정보다는 학교용지 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개정하는 것이 적절함
 - 또한,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 등을 통해 시도별로 학교 이전·재배치 등을 이미 시행중임.

2.. 주요 내용별 검토

(1) 총칙(안 제1조부터 제5조)

제정안은 제1장 총칙에서 목적, 정의, 종합계획·배치계획의 관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 이전·재배치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이전·재배치 수요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하며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전·재배치”란 학교 신설 수요가 있는 지역 내에 기존의 학교를 이전·재배치하거나 학생 수에 비해 학교가 과다하게 배치되어 있는 지역의 학교를 학생 수가 많은 지역으로 균형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2. “개발사업”이란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종합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학교 이전·재배치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4. “배치계획”이란 교육감이 종합계획을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 배치계획의 관계) ① 종합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 중 학교의 배치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② 배치계획은 종합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배치계획이 종합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종합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다만, 배치계획의 내용이 종합계획에 우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학교별 교육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 이전·재배치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전·재배치 학교의 학생에게 최적의 교육여건을 제공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학교 이전·재배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안 제2조 정의규정에서 학교 이전·재배치, 개발사업, 종합계획, 배치계획을 정의하고 있음.

첫째, 이전·재배치(제1호)는 학교 신설 수요(학생수)에 따라 신설수요가 있는 경우 기존의 학교를 이전하고, 학생수에 비해 학교가 과다하게 배치된 경우 학교를 학생 수가 많은 지역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규정함. 즉, 학교의 이전·재배치는 학생수를 고려하여 교육수요와 학교간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둘째, 개발사업(제2호)은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사업에 대한 정의⁸⁾에 따른 것으로 보임.

다만, 학교용지법 제2조제2호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위한 기준이고,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개발사업시행계획의 기준은 300세대 규모 이상인 점을 고려하여⁹⁾ 수정이 필요함¹⁰⁾. 또한, 최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2024.12.6. 정부이송,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으로 제2조제2호의 기준도 300세대 규모 이상으로 개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¹¹⁾.

8)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개발) ①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와 규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10) 교육부 의견과 같음.

11) 개정(2024.12.6. 정부이송,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중 개발사업 정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2. -----

셋째, 종합계획(제3호) 및 배치계획(제4호)은 교육감을 수립주체로 하고, 종합계획은 관할 구역에서 수립되는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 중 학교의 배치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됨을 명시하면서(안 제3조제1항), 종합계획에 따라 배치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안 제3조제2항).

이는 학교의 이전·재배치에 관하여 중장기적인 계획(종합계획 10년, 배치계획 3년)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이를 관리하도록 하면서, 수립주체를 교육감으로 하고 학교의 배치에 관한 계획에 있어서 기본이 됨을 명시하여, 교육감의 학교 이전등에 대한 권한을 명확히 하면서 교육청별로 합리적으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임.

다만, 해당 계획수립 권한은 교육감에게 두면서 배치계획 수립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도록 하고(안 제2조제4호), 배치계획의 내용이 종합계획에 우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육감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3조제2항 단서). 이는 학교재배치에 있어서 전국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취지와 함께 교육부의 조정권한을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u>100세대</u>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 저. (생략) 3. (생략)	----- -----<u>300세대</u>----- ----- ----- ----- ----- -----. 가. ~ 저.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	---

인정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학교 이전·재배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됨¹²⁾.

다음으로, 교육감이 수립하는 종합계획이 관할 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 중 학교의 배치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고 규정(안 제3조제1항)하고 학교 이전·재배치에 관하여 이 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데(안 제5조),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계획(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등)¹³⁾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갈등의 소지가 될수 있으므로 관련 부처와 협의가 요구됨.

12) 안 제2조제4호에 대해서는 교육부 의견도 같음.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역도시계획”이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2. “도시·군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3. “도시·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및 생활권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4.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이하 생략)

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라.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마지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4조)로서 학교 이전·재배치에 필요한 시책 마련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학교 이전·재배치 촉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임.

참고로,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측정항목으로 학교 이전·증설비 등을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로 포함시키고 있고(시행령 별표1)¹⁴⁾¹⁵⁾,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정도 반영 등 인센티브로 학교 신설대체 이전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시행령 별표4)¹⁶⁾¹⁷⁾.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교부금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학교 신설대체

1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6조(기준재정수요액) ② 측정항목과 측정단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단위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에서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등)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5) 학교 이전·재배치 관련 교육재정교부금 측정항목(별표 1)

측정항목	
5. 교육기관 등 시설비	가. 학교 교육환경 개선비
	나. 공립학교 신설·이전(移轉)·증설비
	다. 공립 통합·운영학교 신설·이전비
	라. 공립 유치원 신설·증설비
	마. 학교 통폐합에 따른 신설·이전·개축·증설·대수선비
	바. 사립학교 이전·증설비

1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5조의2(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촉진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제5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함에 있어 지방교육행정기관별로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행정기관별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하기 위한 반영항목, 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17) 학교 신설대체 이전 관련 자체노력 정도 반영항목(별표4)

반영항목	측정단위	산정기준
가. 학교 통폐합, 분교장 개편 및 신설 대체 이전(移轉) 지원	학교 수 및 학생 수	1)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통폐합, 분교장 개편 및 신설 대체 이전 학교 수
		2) 「초·중등교육법」 제30조에 따라 통합·운영한 학교 수
		3)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통폐합 학교 및 분교장의 초과 학생 수

이전비(부지비 및 건축비) 지원으로 13개 학교에 대해 4,471억 6,300만원
 원을, 인센티브 지원으로 13개 학교에 대해 949억 4,000만원을 지원하
 였음.

<최근 3년 학교 신설대체 관련 재정지원(교부금) 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연도	학교	학교신설대체 이전비 (부지비/건축비)	학교	인센티브
22	4	126,623	1	8,000
23	3	113,120	2	13,000
24	6	207,420	10	73,940
계	13	447,163	13	94,940

주 : 학교신설대체 이전비(시행령 별표1), 인센티브(시행령 별표4)

자료 : 교육부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2) 종합계획(안 제6조에서 제10조)

제정안은 제2장 종합계획에서 종합계획의 수립, 내용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시 공청회의 개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 승인 등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제2장 종합계획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 이전·재배치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거나 관할 교육감으로부터 종합계획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종합계획의 내용) ①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학교 수요 및 위치에 관한 사항
3. 관할 구역의 인구통계 및 인구변화에 관한 사항
4. 학생 수 전망 및 학생 배치에 관한 사항
5. 용지의 조성·공급 및 입지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6. 교육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7. 세부 추진 과제·방법 및 단계별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8. 사업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학교 이전·재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종합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공청회의 개최) ① 교육부장관, 교육감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① 교육부장관, 교육감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에게 종합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시·도지사는 그 종합계획안에 대하여 그 시·도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도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종합계획의 승인) ① 교육감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승인하거나 제6조제2항에 따라 직접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수립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정안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학교 이전·재배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학교 이전·재배치에 관한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종합계획에는 목표 및 추진방향, 학교 수요 및 위치, 관할 구역 인구, 학생수 전망 및 배치, 용지 조성·공급, 교육여건 분석, 단계별 추진 전략 및 재원 관련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시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의견수렴 절차와 함께 교육부의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제정안에 대해서는 첫째,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것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학교 이전·재배치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불확실한 행정수요(개발여건, 학생유발 수요등)를 기반으로 실효성이 없을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¹⁸⁾. 참고로, 현재 대부분의 교육청은 학생배치계획을 5년단위로 수립(대구 10년, 충북 6년 외 모든 교육청)하고 있는데, 제정안은 이를 장기계획과 단기계획으로 구분하려는 취지로 보임.

둘째, 교육감이 원칙적으로 종합계획 수립을 하되 ①예외적인 경우 교육부장관이 이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6조제2항)¹⁹⁾ ②종합계

18) 교육부, 동 제정안에 대한 의견

19) 이는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시 시도지사 등이 이를 정비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입안할 수 있도록 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24조제6항제3호와 유사한 취지로 규정한 것으로 보임.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안 제7조제1항 제9호 및 제2항) ③종합계획 수립·변경시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안 제10조제1항)하는 것이,

학교 이전·재배치 권한을 교육감에게 두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는 취지에 부합한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셋째, 공청회 개최(안 제8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안 제9조) 등 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특히, 제정안은 의견수렴 절차만을 의무화하고(내용에는 기속되지 않음)²⁰⁾,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등에 있어서 시도지사와의 갈등 소지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 필요성도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됨.

교육부는 현재도 학교이전시 일정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고²¹⁾,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 의견수렴시 반대 여론으로 학교 이전·재배치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안 제8조), 이는 교육감의 고유권한으로 시도지사와의 의무협의사항은 불필요(안 제9조)하다는 입장임.

제24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2.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3.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제138조에 따른 기한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의 도시·군관리계획 조정 요구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정비하지 아니하는 경우
- 20) 제시된 의견이 타당한 경우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제정안은 절차를 거칠 것을 의무로 하고 내용에 구속되지는 않음.
- 21) 학교 이전 공모계획 수립 및 안내 → 이전재배치 희망학교 선정 → 최종 정책결정을 위한 공론화 →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실시 → 지원계획 수립 및 행·재정 지원 → 조례개정

(3) 배치계획(안 제11조부터 제13조)

제정안은 제3장 배치계획에서 학교 이전·재배치에 관한 배치계획의 수립, 내용 및 수립·변경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를 규정하고 있음.

제3장 배치계획

제11조(배치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학교 이전·재배치에 관한 구체적인 배치계획(이하 “배치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배치계획의 내용) ① 배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인구밀도 및 학생 수
2. 학교 간 거리
3. 통학 거리·시간 등 통학 여건
4. 학교의 규모 및 위치
5. 증축가능성 등 교육시설 여건
6. 지역주민의 의사
7. 향후 개발사업 등에 의한 인구 유입 및 유출 가능성
8. 그 밖에 학교 이전·재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배치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① 교육감은 배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에게 배치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시·도지사는 그 배치계획안에 대하여 그 시·군·구의 의회와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군·구의 의회와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정안은 제3장에서 교육감이 학교 이전·재배치에 관한 구체적인 배치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면서, 배치계획에 지역별 인구 및 학생수, 학교간 거리, 통학여건 등을 포함하도록 하며, 배치계획 수립 및 변경시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함.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육감이 관할학교에 학생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학년도별로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²⁾. 참고로, 현재 대부분의 교육청은 학생배치계획을 5년단위로 수립(대구 10년, 충북 6년 외 모든 교육청)하고 있음.

제정안에 대해서는 첫째, 배치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현행 5년단위 학생배치계획 수립과 비교시 10년, 3년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요청됨.

둘째, 교육감이 배치계획 수립을 하되 배치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을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는 것이(안 제12조제1항제8호 및 제2항), 학교 이전·재배치 권한을 교육감에게 두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배치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는 취지에 부합한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2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학생배치계획) 교육감은 그가 관할하는 학교에 학생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학년도별로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안 제13조)는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안 등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려는 것으로 그 의의를 인정할 수 있음.

이에 대해 교육부는 현재 5년 단위의 중장기 배치계획을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있고(안 제11조 및 제12조), 학교 이전 등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으로 시도지사와의 의무협의 사항은 불필요하다는(안 제13조)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4) 도시·군관리계획과의 관계(안 제14조 및 제15조)

제정안은 제4장 도시·군관리계획과의 관계에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안 및 결정 등에 있어서 학교 이전·재배치에 관한 사항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음.

제4장 도시·군관리계획과의 관계

제14조(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제안) ① 교육감은 수립된 배치계획에 포함된 학교 이전·재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② 제16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는 수립된 개발사업계획 중 학교 이전·재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입안 제안 절차,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준용한다.

제15조(도시·군관리계획 입안·결정) ①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는 교육감으로부터 제안받은 학교 이전·재배치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여야 한다.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가 제안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제안받은 학교 이전·재배치에 관한 사항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할 수 있다.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가 제안받은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사전에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하고, 교육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배치계획에 포함된 학교 이전·재배치에 관한 사항을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원칙적으로 시장·도지사 등²³⁾)에게 제안하도록 하고,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자는 교육감

23)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24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1.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인접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한 경우

2. 제18조제2항에 따라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는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을 때

으로부터 제안받은 학교 이전·재배치에 관한 사항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도록 정하고 있음.

또한, 개발사업시행자도 학교 이전·재배치에 관한 사항을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자는 이를 교육감과 협의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에 따른 학교 이전·재배치 사항의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제안 및 반영>

구분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제안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자의 결정
교육감	배치계획에 포함된 학교 이전·재배치 사항	필요적	지체없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의무적) 변경시 교육감과 사전협의
개발사업 시행자	개발사업계획 중 학교 이전·재배치 사항	임의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 가능(임의적) 반영시 교육감과 사전협의

자료 : 제정안을 토대로 제작성

제정안은 배치계획 및 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된 학교 이전·재배치에 관한 사항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되도록 하려는 취지로서, 교육

에는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입안할 자를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2.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3.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제138조에 따른 기한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의 도시·군관리계획 조정 요구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정비하지 아니하는 경우

⑥ 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직접 또는 시장이나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의 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감의 학교 이전·재배치 계획과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시·군 관리계획이 학교 위치 등 결정에 있어서 통일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법은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계획을 포함한 개발사업계획이 허가 되면 지체없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도록 하고²⁴⁾,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 처리되도록 규정하고 있음²⁵⁾.

제정안은 교육감이 수립한 배치계획에 포함된 학교 이전·재배치에 관한 사항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되도록 하고, 변경시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하는 보다 명확하게 이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그 취지에 공감

2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개발) ①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 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와 규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에 못 미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그 개발사업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한다. 다만, 그 지역이 협소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지와 인접한 곳에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개발하거나 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2분의 1을 부담하는 시·도지사나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계획을 포함한 개발사업계획이 허가·인가 또는 승인되면 지체 없이 그 학교용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25)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학교시설사업”이란 학교시설을 설치·이전하거나 확장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등) ①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규모 및 재원 등이 포함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이하 “감독청”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시행계획에 관하여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협의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해당 사항의 결정·허가·인가·승인·지정·동의·협의·신고 또는 해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할 수 있음. 다만, 이는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용지법 및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등 다른 법률과 중복 규정될 우려가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5) 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안 제16조)

제정안은 제5장 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에서 개발사업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 포함 등을 규정하고 있음.

제5장 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

제16조(학교용지의 조성·개발)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이하 “개발사업계획”이라 한다)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당해 개발사업으로 인해 유발될 것으로 예측되는 학생 수요, 학교용지의 위치 및 모양, 학교의 개교시기 및 재원분담 등에 관하여 교육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때에는 학교용지의 위치, 학교의 개교시기 등에 관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안 제16조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교육감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임.

이는 현행 학교용지법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과 동일함²⁶⁾. 다만, 교육감과 사전협의(학교용지법은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 등 표현상 차이가 있음.

이에 대해 교육부²⁷⁾는 중복된 규정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6) 특례(안 제17조)

제정안은 제6장 특례에서 학교 이전·재배치시 「지방재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26)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개발) ① 300세대(제5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사업분을 뺀 세대 수를 대상으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의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기존 세대를 뺀 세대 수를 대상으로 한다)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와 규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개발하거나 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2분의 1을 부담하는 시·도지사 및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27) 한국주택협회도 같은 의견임.

제6장 특례

제17조(학교 이전·재배치에 관한 특례) ① 교육감이 학교 이전·재배치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 교육감이 학교 이전·재배치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도 불구하고 도시·군계획시설이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③ 교육감이 학교 이전·재배치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건축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도 불구하고 용도변경 및 복수용도의 인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교육감이 학교 이전·재배치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정안은 학교 이전·재배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학교 이전·재배치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일정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편성 등을 하는 경우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투자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²⁸⁾,

28)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직접 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의뢰하여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 가. 채무부담행위
 -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 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²⁹⁾,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시도지사 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³⁰⁾,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및 보호구역내 금지행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³¹⁾.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①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0)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⑤ 제2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다만,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설계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2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29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준용한다.

제19조의2(복수 용도의 인정) ① 건축주는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하여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복수의 용도가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건축기준과 입지기준 등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정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수 용도를 허용할 수 있다.

3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1.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2.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 ② 학교설립예정지를 결정·고시한 자나 학교설립을 인가한 자는 학교설립예정지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할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학교설립예정지가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학교가 폐교되거나 이전(移轉)하게 된 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교설립계획 등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
 3. 유치원이나 특수학교 또는 대안학교의 설립계획이 취소되었거나 설립인가가 취소된 때
- ⑤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2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2.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4.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5.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6.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 및 제21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배출하는 시설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8.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축 사체, 제23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건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 및 제13호에 따른 자연장지(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가족자연장지와 제2호에 따른 중증·문증자연장지는 제외한다)
10.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 시설
11. 「축산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가축시장
1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1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가목9) 및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1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관계 법령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이하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용량의 총량이 허가 또는 신고 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은 포함하되, 규모, 용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정안은 이에 대해 각각 특례를 두어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고, 학교 이전·재배치시 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용도변경 인정을 간주하며,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련 금지행위 등 규제를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외한다)

1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1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1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18.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무도학원 및 무도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같은 법 제60조의3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만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2.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경륜·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주장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2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6.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2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과 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9.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
30.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레미콘 제조업(시멘트와 모래, 자갈 등의 광물성 물질 혼합물에 물을 첨가하여 굳지 아니한 상태로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콘크리트용 비내화 혼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3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중독자재활시설(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또는 게임 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들을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
3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

<제정안에 따른 특례>

구분(안 제17조)	원칙		특례
제1항	지방재정법	투자심사	생략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 설치시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결정 간주
제3항	건축법	용도변경시 시도지사등 허가 또는 신고	용도변경 인정 간주
제4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및 일정한 금지행위 규정	규제완화 적용

제정안은 학교 이전·재배치시 일정한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를 두어 학교 이전·재배치를 촉진하려는 취지로서 그 의의를 인정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첫째, 지방재정법령상 일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 제외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³²⁾ 학교의 이전사업 등도 이에 포함됨에 따라³³⁾, 현재 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자심사 제외대상에 포함되어 있음.

32)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5. 그 밖에 재난예방·안전 사업, 다른 법률에 따라 투자심사와 유사한 심사를 거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의2(투자심사 제외 사업) 법 제37조제3항제5호에서 “재난예방·안전 사업, 다른 법률에 따라 투자심사와 유사한 심사를 거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별표

24.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건축 사업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33)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 지침」, 2024.10. 11면

2. 심사 제외 대상

- 24「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건축 사업 중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업
 -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통합·운영하는 학교의 이전 사업
 -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통폐합에 따른 신설·이전·개축 사업

둘째,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간주 및 용도변경 인정간주는 학교 이전·재배치 절차를 보다 원활하고 간소하게 하려는 취지이나,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한 의견 조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셋째,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및 금지행위 등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는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등 교육환경³⁴⁾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규제라는 점에서, 이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청된다고 할 것임.

교육부는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규제 완화시 지역별 교육여건과 재학생의 학습환경 침해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7) 지원기관 설치 등(안 제18조, 제19조)

제정안은 제7장 지원기관 설치에서 학교 이전·재배치 지원기관 지정 및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을 규정하고 있음.

제7장 지원기관 설치

제18조(학교 이전·재배치 지원기관)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 이전·재배치 촉진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학교시설 및 도시개발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를 학교 이전·재배치

3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환경”이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학교 및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를 말한다.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 이전·재배치 모형 개발
2. 학교 이전·재배치 시행방안 발굴·조사·연구
3. 학교·이전 재배치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4. 학교 이전·재배치 계획 수립 지원
5. 이전·재배치 학교의 입지 적정성에 관한 자문 지원
6. 학교 이전·재배치 전문 인력의 양성 지원
7. 그 밖에 학교 이전·재배치 촉진 및 추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교육부장관은 지원기관이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지원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⑤ 그 밖에 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절차, 그 밖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학교용지의 조성·개발·확보 및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준용한다.

제정안은 연구기관³⁵⁾ 또는 학교시설 및 도시개발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를 학교 이전·재배치 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학교 이전·재배치 모형 개발,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계획 수립 지원 등을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

학교 이전·재배치 촉진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연구 및 조사가 필요하므로 제정안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참고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0조에 따라³⁶⁾, 원활하고 적정한 학교설립을 위해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각종 컨설팅 및 연구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³⁷⁾.

3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연구기관의 설립)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

36)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①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무상공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교육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무상공급 지원기관을 추천할 수 있다.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10조(타당성조사 전문기관) ① 교육부장관은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 등 내부 관리체계

37) 2024년의 경우, ‘재단법인 한국지방교육행정연구재단’을 학교용지·학교시설 무상공급 지원 및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으로 추천·지정하였음.

(8) 부칙

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로 규정하고 있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포 후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공포 후 시행까지 국민이나 시행기관에게 법률의 시행을 알리고 이를 준비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주려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시행일은 제정 당시의 입법정책적인 문제로 볼 수 있음.

제정안은 기존 법률의 개정이 아닌 제정으로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 필요성이 있으므로, 공포 후 3개월 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³⁸⁾.

문 의 처

02)6788-5185

38)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인 경우 일정기간 시행일을 유예하는 것이 가능하나, 개정안은 기존의 의무부과에 대해서 벌칙을 규정하며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므로 입법정책적인 판단으로 즉시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됨.

「헌법」 제53조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법령의 시행유예기간)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